의안번호	제 82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명일 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서명일 · 강창석 · 구점득 · 김경수 · 김경희 · 김남수 · 김묘정 · 김상현 · 김수혜 · 김영록 · 김우진 · 김혜란 · 문순규 · 박선애 · 박해정 · 백승규 · 서영권 · 성보빈 · 심영석 · 오은옥 · 이우완 · 이원주 · 이종화 · 이천수 · 전홍표 · 정순욱 · 진형익 · 최은하 · 최정훈 · 한상석 · 한은정 · 홍용채 · 황점복 의원
발의연월일	2022. 10. 19.

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82

발의연월일 : 2022. 10. 19.

발 의 자 : 서명일·강창석·구점득·김경수·김경희·김남수 김묘정·김상현·김수혜·김영록·김우진·김혜란 문순규·박선애·박해정·백승규·서영권·성보빈 심영석·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종화·이천수 전홍표·정순욱·진형익·최은하·최정훈·한상석 한은정·홍용채·황점복 의원(33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관의 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직무수행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창원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 및 배치) ① 창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단,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회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정책지원관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정책지원관은 창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시정 질문·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조사·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창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창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

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12. 16.>

② 시·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와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8. 22.>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시·도와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1. 12. 16.>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6.>

■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4. 2. 13.>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國會議員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市·道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을 조직하거나, 정당의 조직을 확장하거나, 그 밖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

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 창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3조(사무국장)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21. 12. 16.>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과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2. 31.]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약칭:지방공무원교육법)

제20조(직장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신자세의 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장훈련 실시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 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의원발의 조례제정안 검토 보고

❖ 창원시의회 **서명일 의원** 발의 예정인 「**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임.

Ⅰ 제 정 개 요

○ **조 례 명** : 「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상정시기** : 제1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 **발의의원** : **서명일 의원**(경제복지여성위원회)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책지원관의 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직무수행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Ⅱ 검 토 내 용

1 관계 법령 저촉 여부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 **상위법에 조례 제정 근거가 있고 상위법 저촉사항 없음.**

2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 정책지원관 임용 및 배치[안 제2조]

제2조(임용 및 배치) ① 창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단,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회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안 제3조]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정책지원관은 창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시정 질문·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조사·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창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창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는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에서 정책지원관 직무를 규정하였음.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 직무수행의 제한[안 제4조]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지방공무원이므로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마땅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관련 법령 주요내용>

【 공직선거법 】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 직무·직위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운동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홍보, 선거운동의 기획·실시, 정당·후보자 지지도 조사·발표 등 행위 금지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은 제외)

【 지방공무원법 】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 정당·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가입할 수 없고, 특정정당·특정인의 지지·반대를 위한 투표권유, 서명운동 기획·권유, 홍보물(문서·그림) 게시, 기부금품 모집, 정당·정치단체 가입권유 불가

【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

시행령 제9조(정치적 행위) : 특정정당의 조직·확장, 특정 정치단체지지·반대, 특성 후보자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시위운동 기획·조직·지위·참가·원조, 정치단체의 간행물 발행·편집·배부·원조·방해,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의견 발표, 간행물 게재, 특정 정치단체의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배부·착용·착용권유·착용방해 등

3 재정 부담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선언적으로 명시한 것으로서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 제외

4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조 례 명
특례시(2)	수원시	수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용인시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1)	성남시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강원도(1)	원주시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1)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남(1)	경상남도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 고양시의회를 비롯하여 그 외 의회에서는 의회 사무분장 규칙에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규정하였음.

5 종합의견

○ **상위법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상위법에 조례제정 관련 근거가 있고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 및 의회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조례제정(안)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조례안**

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2. 10. .
발 의 자 : 서명일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관의 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직무수행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창원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 및 배치) ① 창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단,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회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정책지원관은 창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시정 질문·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조사・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창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창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정책지원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조례제정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세입·세출은 없으므로 미첨부 함.

4. 작성자

○ 의회사무국 의회담당관 **최 진 호**